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한신공영(주)[이하 '당사'라 한다]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1.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, 실무위원을 경영기획담당 임원, 공무 임원, 기술부서 임원, 공무 부서장, 실무 간사를 동반성장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현장소장을 선임할

수 있다.

- (2)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(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%)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>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
 -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 -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
 -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
 - ⑤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- 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사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- (5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
- (6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사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사 선정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- (7) 필요시 관련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(8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위원회 회부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- (9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다.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심의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100억 이상의 계약이 종료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적법성 사후검증을 실시한다.

<사후검증 주요 심의사항>

- ① 서면교부 여부
- ②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여부
- ③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여부
- ④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
- ⑤ 부당한 하자보수 책임 전가 여부
- ⑥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

- (2) 심의시기 / 대상

- 반기 1회 / 100억 이상 하도급거래 종료 건

라. 분쟁조정위원회 심의

(1)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.

(2)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절차

단 계	절 차	내 용	비 고
1	분쟁조정신청 접수	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분쟁 접수	
2	분쟁내용 확인	육하원칙 의거 내용 확인	
3	분쟁조정위원회 심의	당사자 의견 개진 및 합의안 제시	
4	재심의	1차 합의 불발시 최대 2회 재심의	

※ 분쟁조정심의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실시

(3)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및 참석인원

- 심의위원 : 감사실장, 공무임원, 기술부서임원
- 간사 : 동반성장팀장

부 칙 (2020. 03. 01.)

본 실천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